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09.03.20 (금) 14:00

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민경환 의원 외 6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9년 3월 17일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3월 18일

3. 제안 이유

- 최근 가정에서 반려의 동물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유기동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·관리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등록방법, 등록대행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3조)
- 나.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장·군수의 의무와 공고사항 명시(안 제4조)
- 다. 보호조치의 위탁과 위탁보호시설 해지요건 명시(안 제5조)

- 라.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근거 명시(안 제6조)
- 마. 동물등록에 따른 수수료 기준과 감면사항 등 명시(안 제7조, 안 제 8 조)
- 바. 권한의 위임사항과 과태료 내용 규정(안 제9조, 안 제10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안’은 가구당 경제력 향상과 핵가족화의 급증에 따라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유기동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등 유기동물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·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.
- 다만, 제정되는 조례안의 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과태료 징수 부분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